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5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소병훈 · 박홍배

민홍철 • 황명선 • 정동영

안호영 · 강준현 · 박민규

민형배 · 허종식 · 박희승

김윤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,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(제29조제2항제3호)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,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 정대리인 또는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4.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	제26조(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
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) ①	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(이하 "8세 이하의	
아동등"이라 한다)의 보호의무	
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	
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	
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	
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	
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	
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
	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
	<u>는 사람</u>
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	②
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	
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	
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

	법정대리인 또는 「치매관리
	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
	관리사업수행기관(국가 또는
	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
	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장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